

## 보험사고 처리 안내

1.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삼성화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 185 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손해사정법인에 사고조사 등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2. 손해사정법인의 사고조사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불가피하게 사고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### [사고 관련 사항]

보험증권번호		사고접수번호	
상품명			
보험상품			
피보험자			
위임손해사정법인			
삼성화재담당자		연락처	
사고조사자		연락처	
대표손해사정사			

3. 지연이자 지급 및 가지급금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, 아래에 기재된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삼성화재 손해사정센터  
담당자 (Tel :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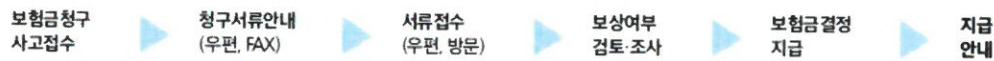
본인은 사고접수後 삼성화재 담당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절차에 관한 일체의 정보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지급절차,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의 분담, 조사 방법, 예상 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등)를 신속히 안내 받았으며, 상기의 "보험사고 처리 안내" 및 유첨 "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" 등을 통하여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     보험금청구인      (서명)

#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

##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.  
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시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##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

-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,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-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  
(보험감독규정 9-16조 :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
  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  -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## 의료심사

- 상해·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,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,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.

##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(비례보상 적용)

-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.
-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

-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

-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([www.samsungfire.com](http://www.samsungfire.com))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,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

-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,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소보운영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접수 :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/ 전화상담 : 1588-5114 (질병 및 상해 사고접수 / ARS 착신 후 5번을 누르십시오.)
- 우편 : (우06620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, B동 삼성화재 3층 소보운영파트
- 상해·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, 재물·배상책임사고는 10영업일 이내이며,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## 예상 지급일

-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연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자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

-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.

## 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

- 당사 콜센터(TEL "1588-5114"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진료비확인신청제도

-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.
-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
  - 급여진료비 중 '전액본인부담'
  - 비급여진료비 중 '선택진료료', '선택진료이외' 항목의 비용
- 진료비 확인방법: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, 모바일 앱, 우편 / FAX요청, 방문상담 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 
(문의전화 : 1644:2000)